

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(공시송달)

보험업법 제86조,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(보험설계사,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)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20일
금융위원회위원장

1. 공시송달 대상자

성명	주민번호/사업자번호	주소
주옥희	621002-*****	경상남도 김해시
방수연	870415-*****	서울특별시 구로구
윤희숙	741126-*****	전라남도 여수시
김준영	900619-*****	경기도 남양주시
심호경	641124-*****	경기도 남양주시

2. 서류의 명칭 :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

3. 서류의 내용

(1)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.

(2)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,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4.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(02-2100-2965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